| 의안번호 | 제 93 호 |
| :--- | :---: |
| 의 결 <br> 연 월 일 | 2010년 12 월 일 |
| (제 296 회) |  |

## 
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:--- | :--- |
| 제출연월일 | 2010년 12 월 3 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#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•운영 조례 폐지조례(안)

| 의 안 93 <br> 번 호   |  |
| :--- | :--- |

제출연월일 : 2010년 12월 3일
제 출 자: 충 청 북도 지 사

## 1. 제안사유

○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(2010.6.30)되어

○ 근거법령이 없고 자문기능만 있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-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O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•운영조례 폐지
3. 의안전문 : 붙 임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O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20 조 및 동시행령 제 15 조
O 지속가능발전법 제 7 조 및 동시행령 제 15 조
O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제 5 조, 제 8 조 및 제 10 조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지속기능발전위원회 살치 •운영 조례 폐지조려(연)

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•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렁 발췌

## $\square$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

제 20 조 (지방녹생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(1)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•도지사 소 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(이하 "지방녹색성장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(2)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$\square$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

제15조(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밎 운영 등) (1)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 위원회는 위원장 2 명을 포함한 5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(2)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(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 명 이상인 시•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•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)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•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(3)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시•도 소속 실장•국장급 공무원 중 시•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
2. 기후변화, 에너지•자원, 녹색기술•녹색산업,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 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•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(4)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3.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4. 지방추진계획의 수립•변경에 관한 사항
5.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
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(5)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•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$\square$ 지속가능발전법

제7조（국가•지방이행계획의 협의•조정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•광역시장• 도지사•특별자치도지사（이하＂시•도지사＂라 한다）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• 광역시•도•특별자치도（이하＂시•도＂라 한다）의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0조 제 4 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（이하＂국가이행계획＂이라 한다）또는 같 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（이하＂지방이행계획＂이라 한다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•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•조정하여야 한 다．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•도지사는 그 협의•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 15 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（이하＂위원회＂라 한다）또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」 제 20 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．

제15조（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）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．

## $\square$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

제5조（다른 조례와의 관계）（1）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．
（2）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．
（3）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．

제8조（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）（1）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（이하＂위원회＂라 한다）를 둔다．
（2）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．
（3）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체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．
（4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．다만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．

제 10 조(분과위원회 구성) (1)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녹색성장.산업 분과위원회 : 지방추진계획, 재정, 법제도 및 녹색기술,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
2. 기후변화•에너지 분과위원회 :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,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,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
3. 녹색생활•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, 녹색생활 확산, 녹색 국토, 녹색건물,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, 물관리 등의 분야
(2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 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,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.
(3) 제 1 항의 분과위원회는 15 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.
